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2년 12월 7일

신한 BNPP 법인용 Growth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 2 자본시장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3 지구 수정
 - 4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법인용 Growth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	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법인용 Growth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법인용 Growth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법인용 Growth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수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수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수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수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
2.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 10. <생략>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이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 10. <현행과 같음>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3. 자구 수정: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권 및 채무증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나. 투자제한 - 동일종목 투자 - 나. ... 주택저당채권유통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통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충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집합투자증권 <신설></p>	<p>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채무증권 환매조건부매도 나. 투자제한 - 동일종목 투자 - 나. ... 주택저당채권유통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충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집합투자증권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4.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4.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p>	<p>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2012.11.30.)</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2년 3월 31일, 2012년 11월 30일)</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 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법인용 Growth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p>	<p>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법인용 Growth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p>
<p>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력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p>	<p>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력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p>
<p>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3부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p>	<p>제3부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2) 매입 및 환매 절차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신설></p>	<p>제3부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2) 매입 및 환매 절차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e 종류 직판</p>
<p>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2012.11.30.)</p>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 2 자본시장 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3 자구 수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생략></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종류 투자자격 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p> <p>종류 A수익증권 투자자격 제한없음 신취 판매수수료 있음(제40조 참조)</p> <p>종류 C-1 수익증권 신규 납입금액이1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p> <p>종류 C-2 수익증권 신규 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p> <p>종류 C-3 수익증권 신규 납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p> <p>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해당사항 없음</p> <p><신설></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종류 투자자격 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p> <p>종류 A수익증권 투자자격 제한없음 신취 판매수수료 있음(제40조 참조)</p> <p>종류 C-1 수익증권 신규 납입금액이1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p> <p>종류 C-2 수익증권 신규 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p> <p>종류 C-3 수익증권 신규 납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p> <p>종류 C-e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해당사항 없음</p> <p>종류 직판 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p>
<p>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거래 전역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p> <p>2. 종류 C-1 수익증권</p> <p>3. 종류 C-2 수익증권</p> <p>4. 종류 C-3 수익증권</p> <p>5. 종류 C-e 수익증권</p> <p>(신설)</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거래 전역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p> <p>2. 종류 C-1 수익증권</p> <p>3. 종류 C-2 수익증권</p> <p>4. 종류 C-3 수익증권</p> <p>5. 종류 C-e 수익증권</p> <p>6. 종류 직판 수익증권</p>
<p>1. 종류 직판 수익증권 추가: 제39조 (보수)</p>	<p>제39조 (보수)</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39조 (보수)</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종류 직판 수익증권</p> <p>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65]</p> <p>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p> <p>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p> <p>D.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⑩ <생략></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유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약결제위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⑩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 주력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충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생략> 3. ~ 8. <생략> 9.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주력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충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현행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9.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p>
<p>3. 자구수정: 제2조(용어의 정의)</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3. <생략>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 7.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229조 제1호의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p>
<p>3. 자구수정: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p>	<p>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생략>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p>	<p>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청구한 때로부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p>
<p>3. 자구수정: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8. <생략>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10. <생략> ②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8. <현행과 같음>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3. 자구수정: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4. <생략>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 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 7. <생략> 8.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생략></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 7. <현행과 같음> 8.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현행과 같음></p>
<p>3. 자구수정: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법·분할·분할합병 및 제44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⑤ <생략></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⑤ <현행과 같음></p>
<p>3. 자구수정: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② <생략>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생략></p>	<p>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p>